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정주인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지원하며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로 선발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에서 신규 채용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채용 의무의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예외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의 예외규정(안 제9조)

법률에서 위임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예외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3.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4. 지역인재의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5. 공공기관 신규채용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법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u><신 설></u>	제9조(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① <u>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u> <u>1.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 인 경우</u> <u>2.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 력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u> <u>3.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제한 하여 채용하는 경우</u> <u>4. 지역인재의 평가 결과가 공공 기관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 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u> <u>5. 공공기관 신규채용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법에서 정 한 비율 이하인 경우</u>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 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 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② ----- ----- ----- ----- -----

다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 법
제13조제4항 -----

-----.

1. ~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

-----.